

NEWSLETTER 686

Jul 26, 202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안내

- 환급 신청 기간 연장 및 과다 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사유 폐지 관련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고(제2022-141호)에 따라 환급특례법 일부 내용이 개정 되었으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의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사유를 폐지하여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납세 협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II. 주요 개정 사항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신청 기간 연장

-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 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을 신청해야 하던 것을 5년 이내로 연장함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 (환급신청)</p> <p>①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 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p> <p>1~3. (생략)</p>	<p>제14조 (환급신청)</p> <p>①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 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p> <p>1~3. (현행과 같음)</p>

IV.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2년 7월 29일 까지

2. 제출방법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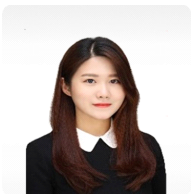
2. 보내실 곳

- 담당 부서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jun6224@korea.kr)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TEL) 044-215-4417 / (FAX) 044-215-8075
- 온라인 제출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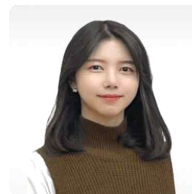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
- [붙임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Contact



서경은 관세사
T 02-6011-3033
E keso@esein.co.kr



황혜준 관세사
T 070-4353-1597
E hjhwang2@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2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